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11-8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공유재산내 무단점유 시설물 소유자에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으나 지정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12.12일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거부·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 12. 2

서울특별시 중 구



1. 제목 : 대집행영장(무단점유 시설물 정비) 통지

2. 공고 대상자 및 대집행할 대상물

공고 대상자		대집행할 대상물(무단점유 시설물)		비 고
성 명	주 소	점유지번(국·공유재산)	점포명 또는 유형	
	신당동 779, 791 내 무단점유시설물 소유자	신당동 779, 791	노점	현장사진 참고
김홍자	서울 중구 신당동 251-74	신당동 779	음식노점(광분식)	현장사진 연번1
황철홍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24	신당동 779	삼성비니루	현장사진 연번10
이철호	서울 중구 신당동 152-6	신당동 779	신영의류	현장사진 연번15
정동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87 에이스아크로텔 808호	신당동 779	성지의류	현장사진 연번18
한호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 주공아파트 901동 1106호	신당동 779	신발노점(퓨전)	현장사진 연번19
한호택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3-6 토성빌라 205호	신당동 779	신발노점(퓨전)	현장사진 연번19
김옥순	서울 중구 흥인동 145	신당동 779	음식노점(포장마차)	현장사진 연번22

3. 공고기간 : 2011.12.02.~2011.12.11.(10일간)

4. 공고내용(송달할 영장의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재산(신당동 779, 신당동 791번지 도로)을 무단점용 및 불법수익하고 있는 자에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등) 및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철거)의 규정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대집행할 일자 : 2011. 12. 12

☐ 대집행책임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백영규, 이창하

☐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 견적액 : 대집행후 실제 집행액 청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02-3396-6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사진 1부.

2. 공시송달서 1부.

3. 대집행영장 1부. 끝.

인

신당동 779, 791내 불법시설물(노점) 현장사진

연번1



연번2



연번3



연번4



연번5



연번6



연번7



연번8



연번9



연번10



연번11



연번12



연번13



연번14



연번15



연번16



연번17



연번18



연번19



연번20



연번21



연번22



연번23



연번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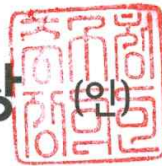
공 시 송 달 서

1. 의무자의 주거, 성명 : 공시송달공고문 참고
2. 대집행할 대상물 및 그 소재지
: 서울 중구 신당동 779, 791 내 무단점유시설물(노점)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영장

의무자에게 송달할 서류가 이사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9, 791 무단점유시설물(노점) 소유주 귀하

대 집 행 영 장

주 소 : (공시송달공고문 참고)

성 명 : 신당동 779, 791내 무단점유시설물(노점) 소유주(공시송달공고문 참고)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재산(신당동 779, 신당동 791번지 도로)을 무단점용 및 불법수익하고 있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철거)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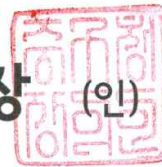
☐ 대집행할 일자 : 2011. 12. 12.

☐ 대집행책임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백영규, 이창하

☐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 견적액 : 대집행후 실제 집행액 청구

2011. 12. 2.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9, 791내 무단점유시설물(노점) 소유주 귀하